

1. 개정이유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에 따른 국제출원 및 국제디자인등록출원 절차의 도입 및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연장 등을 내용으로 「디자인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1848호, 2013. 5. 28. 공포, 2014. 7. 1. 시행)됨에 따라 수수료 징수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국내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연장에 따른 등록료 규정 및 디자인일부심사등록료를 국내출원인이 국제디자인 일부심사등록출원 후 20년 유지 시 드는 총비용 수준을 고려하여 재설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제디자인출원 수수료 징수근거 신설(안 제12조)

국제디자인출원절차를 진행할 때 발생하는 송달료, 지정수수료 및 갱신료를 정함

나. 디자인권 존속기간 연장에 따른 등록료 규정(안 별표3)

- (심사등록) 16년부터 20년까지의 등록료는 특허등록료 요금체계*를 동일하게 반영하여 현행 13년부터 15년까지의 디자인심사등록료(매년 21만원) 수준을 적용

* 특허등록료의 경우 13년부터 20년까지 동일 기본료에 동일 향가산료 적용

- 심사등록출원 시에도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별표3]

중 ‘디자인심사등록출원’에 ‘1디자인마다’를 추가

○ (일부심사등록) 16년부터 20년까지의 등록료는 위의 ‘심사등록’을

준용하여 13년부터 15년까지의 디자인일부심사등록료(매년 34천원)

수준을 적용

- [별표3] 중 제4년부터 제15년까지의 디자인일부심사등록료를 국내출

원인이 국제디자인 일부심사등록출원하여 20년 유지 시 드는 총비용

수준을 고려하여 재설정

다. 기타 「디자인보호법」 개정내용 반영(안 제4조, 제6조 등)

전부개정 「디자인보호법」(법률 제11848호)을 반영하여 용어 및 인용

조문을 변경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기획재정부와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개정령안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4조제1항”을 “제85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다목 중 “무심사등록출원서”를 “일부심사등록출원서”로, “경우 :”를 “경우:”로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무심사등록출원서”를 “일부심사등록출원서”로, “경우 :”를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분할출원료 :”를 “제50조에 따른 분할출원료:”로 하며, 같은 호 가목 중 “경우 :”를 “경우:”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경우 :”를 “경우:”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본문 중 “우선심사신청료 :”를 “우선심사신청료:”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제6조제2항”을 “제7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보정료 :”를 “보정료:”로 하고, 같은 호 가목 본문 중 “경우 :”를 “경우:”로 하며, 같은 목 단서 중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을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본문 중 “경우 :”를 “경우:”로 하며, 같은 목 단서 중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을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경우 :”를 “경우:”로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경우 :”를 “경우:”로 하고, 같은 호 마목 중 “제27조의2”를 “제64조”로 하며, 같은 호 바목 중 “제27조의2”를 “제64조”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가목 중

“1회 :”를 “1회:”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2회 :”를 “2회:”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3회 :”를 “3회:”로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4회 :”를 “4회:”로 하고, 같은 호 마목 중 “이상 :”를 “이상:”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1조에 따른 디자인등록료(유사디자인등록료”를 “제79조에 따른 디자인등록료(관련디자인등록료”로, “디자인등록관련”을 “디자인등록∨관련”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디자인등록료 :”를 “디자인등록료:”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중 “디자인권(유사디자인권”을 “디자인권(관련디자인권”으로 하고,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 중 “유사디자인”을 “관련디자인”으로 하며, 같은 호 가목 중 “경우 :”를 “경우:”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경우 :”를 “경우:”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경우 :”를 “경우:”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가목 내지 다목외”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 외”로, “경우 :”를 “경우:”로 하며, 같은 항 제3호가목 중 “전용실시권 :”를 “전용실시권:”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통상실시권 :”를 “통상실시권:”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본문 중 “제한등록료 :”를 “제한등록료:”로 하고, 같은 항 제5호가목 중 “경우 :”를 “경우:”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경우 :”를 “경우:”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경우 :”를 “경우:”로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가목 내지 다목 외”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 외”로, “경우 :”를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회복등록료 :”를 “회복등록료:”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가등록료 :”를 “가등록료:”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변경등록료 :”를 “변경등록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4조의

규정”을 “제85조”로, “각호”를 “각V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가목 중 “경우 :”를 “경우:”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경우 :”를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경우 :”를 “경우:”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경우 :”를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통상실시권허여심판청구료 :”를 “통상실시권허여심판청구료:”로, “제1호의 규정”을 “제1호”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재심청구료 :”를 “재심청구료:”로, “제1호 내지 제3호”를 “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보정료: 다음 각V목의 금액.

제4조제3항제5호가목 중 “경우 :”를 “경우:”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경우 :”를 “경우:”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청구료 :”를 “청구료:”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청구료 :”를 “청구료:”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가목 중 “1회 :”를 “1회:”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2회 :”를 “2회:”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3회 :”를 “3회:”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4회 :”를 “4회:”로 하며, 같은 호 마목 중 “5회이상 :”를 “5회V이상:”로 한다.

제6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유사디자인등록증, 복수디자인등록증”을 “관련디자인등록증”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중 “유사디자인등록증, 휴대용 복수디자인등록증”을 “관련디자인등록증”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23조의5”를 “제55조”로, “제22조제3항의 규정”을 “제22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제외한다) :”를 “제외한다):”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경우 :”를 “경

우:”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제외한다) :”를 “제외한다):”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1조의2”를 “제41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제69조”를 “제122조”로 한다.

제8조제1항제4호 중 “제17조제3호”를 “제47조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본문 중 “제33조의2”를 “제83조”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 전단 중 “제33조의3제3항의 규정”을 “제84조제3항”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제36조”를 “제87조”로 한다.

제12조를 제13조로 하고,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헤이그 협정에 따른 국제출원수수료) ① 「디자인보호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송달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제출원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 매건 5천원
2. 국제출원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 매건 1만5천원

② 「디자인보호법」 제196조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제디자인등록출원

가. 일부심사출원: 헤이그협정 공통규칙의 수수료표에서 정한 3수준의 표준지정수수료

나. 심사출원: 1디자인마다 23만9천원

2. 국제등록존속기간갱신

가. 일부심사출원: 헤이그협정 공통규칙의 수수료표에서 정한 3수준의 표준지정수수료

나. 심사출원: 1차 갱신료는 1디자인마다 38만5천원, 2차 갱신료는 9
1만원, 3차 갱신료는 1백5만원

③ 제8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제12항부터 제14항까지의 규정은 제1항
에 따른 수수료의 납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3조(중전의 제12조) 중 “제11조”를 “제12조”로 한다.

별지 별표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출원한 디자인등록
출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디자인권의 존속기간 연장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연장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출원되어 디자
인등록된 디자인권부터 적용한다.

제4조(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등록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 3 중 제4년
부터 제15년까지의 개정규정은 제8조제8항 본문에 따른 납부기간이
끝나는 날이 이 규칙 시행 후인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등록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
행 전에 중전의 규정에 따라 납부된 등록료는 별표 3 중 제4년부터
제15년까지의 개정규정에도 이 규칙에 따라 납부된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등록료의 납부기간이 지난 경우로서 그 전부 또는 일부가 납부되지 아니한 경우의 등록료는 별표 3 중 제4년부터 제15년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유사디자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유사디자인으로 등록출원되거나 등록된 디자인에 대하여는 제4조제2항제1호·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유사디자인등록증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유사디자인으로 등록출원되거나 등록된 디자인에 대하여는 제6조제1항제1호·제1호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3] <개정 2005.7.1, 2006.4.27>

디자인등록료(제4조제2항제1호관련)

디자인권설정 등록일부터의 연수	금 액	
	디자인심사 등록출원	디자인일부심사 등록출원
제1년부터 제3년까지	1디자인마다 매년 2만5천원	1디자인마다 매년 2만5천원
제4년부터 제6년까지	1디자인마다 매년 3만5천원	1디자인마다 매년 3만4천원
제7년부터 제9년까지	1디자인마다 매년 7만원	1디자인마다 매년 3만4천원
제10년부터 제12년까지	1디자인마다 매년 14만원	1디자인마다 매년 3만4천원
제13년부터 제20년까지	1디자인마다 매년 21만원	1디자인마다 매년 3만4천원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디자인등록료 및 디자인 관련 수수료) ① 「디자인보호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출원 관련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조(디자인등록료 및 디자인 관련 수수료) ① ----- 제85조제1항----- -----.
1. 디자인등록출원료	1. -----
가.·나. (생략)	가.·나. (현행과 같음)
다. 무심사등록출원서를 전자 문서로 제출하는 경우 : 1 디자인마다 4만5천원	다. 일부심사등록출원서----- ----- 경우:- -- -----
라. 무심사등록출원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 : 1 디자인마다 5만5천원	라. 일부심사등록출원서----- ----- 경우:- -- -----
2. 「디자인보호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분할출원료 : 디자인권의 신규출원료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	2. ----- 제50조에 따른 분할출원료:----- ----- -----.
가.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을 분할출원하는 경우 : 분할되는 출원마다 1만원	가.----- ----- 경우:- ----- -----
나.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의 1 일련번호의 디자인에 대하여 디자인심사등록분할출	나.----- ----- -----

원을 하는 경우 : 2만5천원

3. ~ 5. (생략)

6. 디자인등록출원의 우선심사
신청료 : 매건 7만원. 다만, 해당 출원이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른 우선심사의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되거나 그 결정이 있기 전에 우선심사신청을 포기·취하한 경우에는 1만4천원으로 한다.

7. 보정료 : 다음 각 목의 금액. 다만, 보정의 기준 및 보정료의 납부대상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특허청장이 고시한다.

가. 보정서(복수디자인등록출원의 도면 보정서는 제외한다)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 : 매건 4천원. 다만,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을 디자인심사등록출원으로 변경하는 보정을 하는 경우에는 1만8천원

나. 보정서(복수디자인등록출원의 도면 보정서는 제외한다)를 서면으로 제출하

----- 경우:- -----

3. ~ 5. (현행과 같음)

6. ----- 우선심사신청
청료:- -----

 ---- 제7조제2항-----

 -----.

7. 보정료:- -----

 -----.

가. -----

나. -----

는 <u>경우</u> : 매건 1만4천원. 다만, <u>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u>을 디자인심사등록출원으로 변경하는 보정을 하는 경우에는 2만8천원 다.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의 도면에 관한 보정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u>경우</u> :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의 1일련번호의 디자인마다 4천원 라.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의 도면에 관한 보정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u>경우</u> : 복수디자인 등록출원의 1일련번호의 디자인마다 1만4천원 마. 「디자인보호법」 <u>제27조</u>의2에 따른 보정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 매건 3만원 바. 「디자인보호법」 <u>제27조</u>의2에 따른 보정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 매건 4만원 8. ~ 10. (생략) 11. 법정기간 연장신청료	<u>경우:-</u> -----. - <u>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u>----- ----- ----- 다.----- ----- ----- <u>경우:-</u> ----- ----- ----- 라.----- ----- ----- <u>경우:-</u> ----- ----- ----- 마.----- <u>제64조</u> ----- ----- ----- 바.----- <u>제64조</u> ----- ----- ----- 8. ~ 10. (현행과 같음) 11. -----
---	--

가. 1회 : 매건 2만원

나. 2회 : 매건 3만원

다. 3회 : 매건 6만원

라. 4회 : 매건 12만원

마. 5회 이상 : 매건 24만원

11의2. ~ 13. (생략)

② 「디자인보호법」 제31조에 따른 디자인등록료(유사디자인 등록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그 밖의 디자인등록관련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디자인등록료 : 별표 3과 같다.

2. 디자인권(유사디자인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이전등록료는 다음 각 목의 금액. 이 경우 복수디자인등록출원에 의한 디자인권은 디자인(유사 디자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수에 관계없이 이를 1건으로 본다.

가. 상속에 의한 경우 : 매건 1만4천원

나. 법인의 분할·합병에 의한 경우 : 매건 1만4천원

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가. 1회:- -----

나. 2회:- -----

다. 3회:- -----

라. 4회:- -----

마.--- 이상:- -----

11의2. ~ 13. (현행과 같음)

② ----- 제79조에 따른 디자인등록료(관련디자인 등록료----- 디자인등록 ∨ 관련-----.

1. 디자인등록료:- -----
-.

2. 디자인권(관련디자인권-----
-----.
----- 관련 디자인-----
-----.

가.----- 경우:- -----

나.-----
- 경우:- -----

다.-----

경우:—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
정 외- 경우:- -----

3. _____

가. 전용실시권:- -----
--

나. 통상실시권:- -----
--

4. -----

----- 제한등록료:- -----
-----.

-----.

5. _____

4호에 따른 질권의 이전등록
료

가. 상속에 의한 경우 : 매건
1만4천원

나. 법인의 분할·합병에 의
한 경우 : 매건 1만4천원

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약정을
체결한 기업이 경영정상화
계획의 이행을 위하여 행
하는 영업양도의 경우 : 매
건 1만4천원

라. 가목 내지 다목외의 사유
에 의한 경우 : 매건 4만3
천원

6. 등록사항의 경정·변경(행정
구역 또는 지번의 변경으로
인한 경우 및 등록명의인의
표시변경 또는 경정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취소·말
소 또는 회복등록료 : 매건 5
천원

7. 가등록료 : 매건 1만3천원
7의2. (생략)

8. 신탁등록 또는 그 변경등록
료 : 매건 2만원

--

가.----- 경우:- -----

나.-----
- 경우:- -----

다.-----

----- 경우:-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
정 외- 경우:- -----
--

6. -----

--- 회복등록료:- -----

7. 가등록료:- -----
7의2. (현행과 같음)

8. ----- 변경등록
료:- -----

③ 「디자인보호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심판청구 관련 수
수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료

가. 청구서를 전자문서로 제
출하는 경우 : 1디자인마다
24만원

나. 청구서를 서면으로 제출
하는 경우 : 1디자인마다 2
6만원

2. 보정각하결정불복심판청구료

가. 청구서를 전자문서로 제
출하는 경우 : 매건 20만원

나. 청구서를 서면으로 제출
하는 경우 : 매건 22만원

3. 취소결정불복심판, 무효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통상실시
권허여심판청구료 : 직접적으
로 심판청구의 이유가 있는
디자인에 대하여 제1호의 규
정에 따라 산정한 금액

4. 재심청구료 : 원 심판의 종류
에 따라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

5. 보정료 : 다음 각목의 금액.

③ ----- 제85조-----

----- 각V호-----.

1. -----

가.-----
----- 경우:- -----

나.-----
----- 경우:- -----

2. -----

가.-----
----- 경우:- -----

나.-----
----- 경우:- -----

3. ----- 통상실
시권허여심판청구료:- -----
----- 제1호-----

4. 재심청구료:- -----
----- 제1호부터 제3호까지

5. 보정료: 다음 각V목의 금액.

다만, 보정의 기준 및 보정료의 납부대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특허청장이 고시한다. 가. 보정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u>경우</u> : 매건 4천원 나. 보정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u>경우</u> : 매건 1만4천원 6.·7. (생략) 8. 비용액결정의 <u>청구료</u> : 매건 5백원 9. 집행문 정본의 <u>청구료</u> : 매건 4백원 10. 법정기간 연장신청료 또는 기일변경신청료 가. <u>1회</u> : 매건 2만원 나. <u>2회</u> : 매건 3만원 다. <u>3회</u> : 매건 6만원 라. <u>4회</u> : 매건 12만원 마. <u>5회이상</u> : 매건 24만원 10의2.·11. (생략) 제6조(그 밖의 수수료) ① 특허·실용신안·디자인 및 상표 관련 각종 증서의 교부신청 또는 각종 서류의 사본 교부신청 등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 -----. 가.----- ---- <u>경우</u>:- ----- 나.----- --- <u>경우</u>:- ----- 6.·7. (현행과 같음) 8. ----- <u>청구료</u>:- ---- ----- 9. ----- <u>청구료</u>:- -- ----- 10. ----- ----- 가. <u>1회</u>:- ----- 나. <u>2회</u>:- ----- 다. <u>3회</u>:- ----- 라. <u>4회</u>:- ----- 마. <u>5회 이상</u>: ----- 10의2.·11. (현행과 같음) 제6조(그 밖의 수수료) ① ----- ----- ----- ----- ----- -----.
--	---

1. 특허증, 실용신안등록증, 디자인등록증, 유사디자인등록증, 복수디자인등록증, 상표등록증, 서비스표등록증, 상표·서비스표등록증, 단체표장등록증,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증, 업무표장등록증의 재교부신청료

가. ~ 다. (생략)

1의2. 휴대용 특허증, 휴대용 실용신안등록증, 휴대용 디자인등록증, 휴대용 유사디자인등록증, 휴대용 복수디자인등록증, 휴대용 상표등록증, 휴대용 서비스표등록증, 휴대용 상표·서비스표등록증, 휴대용 단체표장등록증, 휴대용 지리적표시 단체표장등록증, 휴대용 업무표장등록증의 교부신청료

가.·나. (생략)

2. ~ 4. (생략)

5. 출원 관련서류, 등록 관련서류, 이의신청 관련서류, 심판 관련서류와 「특허법」 제63조의2, 「실용신안법」 제15

1. -----
----- 관련디자인등록증-----

가. ~ 다. (현행과 같음)

1의2. -----

----- 관련디자인등록증-----

가.·나. (현행과 같음)

2. ~ 4. (현행과 같음)

5. -----

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63조의2, 「디자인보호법」 제23조의5 또는 「상표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정보제공 관련서류의 사본 교부신청료 및 공보료(마이크로필름류 및 광디스크류를 포함한다) 또는 도서의 복사 신청료

가. 온라인으로 수령하는 경우(공보료 또는 도서의 복사를 제외한다) : 무료

나. 서면으로 수령하는 경우 : 매면 100원

다. 모사전송으로 수령하는 경우(등록 관련서류 및 이의신청 관련서류를 제외한다) : 매면 300원

6. ~ 10. (생략)

② (생략)

제7조(특허료·등록료·수수료 및 심사청구료 등의 면제 및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발명자·고안자 또는 창작자와 출원인이 같은 경우만 해당한다)가 「특허법」

- 제55조-----

제22조제3항-----

가.-----

--- 제외한다):- ---

나.----- 경우:-

다.-----

----- 제외한다):- -----

6. ~ 10.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7조(특허료·등록료·수수료 및 심사청구료 등의 면제 및 감면) ① -----

· 「실용신안법」 또는 「디자인보호법」에 따른 출원·심사 청구 또는 권리설정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특허법」·「실용신안법」 또는 「디자인보호법」별로 각각 연간 10건(반려되거나 1개월 이내에 취하 또는 포기된 것은 제외하며, 「디자인보호법」 제11조의2에 따른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은 1 출원에 면제받을 수 있는 디자인은 3개 이하로 한다)에 한하여 그 출원에 대한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의 특허료·실용신안등록료 또는 디자인등록료를 면제한다.

1. ~ 7.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이 경우 100원 미만의 금액은 감면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 3. (생략)

4. 개인, 소기업 또는 중기업이 자신의 특허권·실용신안권 또는 디자인권에 대하여 「특

제41조

1. ~ 7. (현행과 같음)

② -----

-----.

1. ~ 3. (현행과 같음)

4. -----

허법」 제135조, 「실용신안법」 제33조 또는 「디자인보호법」 제69조에 따른 권리범위확인심판(이하 “권리범위확인심판”이라 한다)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심판청구료의 10분의 70 5. ~ 9. (생략) ③ ~ ⑧ (생략) 제8조(납부방법 등) ① 이 규칙에 따른 특허료·등록료 및 수수료는 접수번호를 부여받아 이를 납부자번호로 하여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날의 다음 날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에서 각각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 3. (생략) 4. 「특허법」 제46조제3호, 「실용신안법」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46조제3호, 「디자인보호법」 제17조제3호 또는 「상표법」 제13조제3호·제86조의10의 규정에 해당하여 특허청장 또	----- ----- --- 제122조 ----- ----- ----- ----- --- 5. ~ 9. (현행과 같음) ③ ~ ⑧ (현행과 같음) 제8조(납부방법 등) ① ----- ----- ----- ----- ----- ----- ----- ----- -----. 1. ~ 3. (현행과 같음) 4. ----- ----- ----- ----- 제47조제3호 ----- ----- -----
---	---

는 특허심판원장이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한 때에 납부자번호를 부여한 경우에는 그 기간 이내에 그 납부자번호로 해당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5. (생략)

② ~ ⑧ (생략)

⑨ 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허법」 제81조의2, 「실용신안법」 제20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81조의2, 「디자인보호법」 제33조의2 및 「상표법」 제36조의2에 따라 특허료 또는 등록료의 보전명령을 받은 자는 그 보전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특허료 또는 등록료를 보전하여야 한다. 다만, 특허료 또는 등록료의 납부기간 또는 추가납부기간을 경과하여 보전하는 때에는 부족하게 납부된 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⑩ 「특허법」 제81조의3제3항,

-----.

5. (현행과 같음)

② ~ ⑧ (현행과 같음)

⑨ -----

----- 제
83조-----

-----.

⑩ -----

「실용신안법」 제20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81조의
 3제3항 또는 「디자인보호법」
제33조의3제3항의 규정에 따라
 소멸한 특허권·실용신안권 또
 는 디자인권을 회복하고자 하는
 자는 제8항 단서 또는 제9항 본
 문에 규정에 따른 기간의 만료
 일부터 3월 이내에 특허료 또는
 등록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조제2항제1호의 규정
 에 따른 특허료 또는 제3조제2
 항제1호·제4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등록료의 3배에 상
 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
 다.

⑪ ~ ⑮ (생략)

제9조(반환할 특허료·등록료·
 수수료 및 등록세의 납부사항
 정정) ① 「특허법」 제84조,
 「실용신안법」 제20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84조,
 「디자인보호법」 제36조, 「상
 표법」 제38조 및 이 규칙 제8
 조제18항에 따라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납부일부터 1년

제84조제3항

⑪ ~ ⑮ (현행과 같음)

제9조(반환할 특허료·등록료·
 수수료 및 등록세의 납부사항
 정정) ① -----

 ----- 제87조 -----

이내에 특허료·등록료·수수료 및 등록세 납부사항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삭 제

<신 설>

-----.

② 삭 제

제12조(헤이그 협정에 따른 국제출원수수료) ① 「디자인보호법」 제178조제2항에 따른 송달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제출원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 매건 5천원
2. 국제출원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 매건 1만5천원

② 「디자인보호법」 제196조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제디자인등록출원
 - 가. 일부심사출원: 헤이그협정 공통규칙의 수수료표에 서 정한 3수준의 표준지정 수수료
 - 나. 심사출원: 1디자인마다 23만9천원
2. 국제등록존속기간갱신
 - 가. 일부심사출원: 헤이그협정 공통규칙의 수수료표에 서 정한 3수준의 표준지정

	<u>수수료</u> <u>나. 심사출원: 1차 갱신료는 1</u> <u>디자인마다 38만5천원, 2</u> <u>차 갱신료는 91만원, 3차</u> <u>갱신료는 1백5만원</u> <u>③ 제8조제1항 본문 및 제2항,</u> <u>제12항부터 제14항까지의 규정</u> <u>은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납부</u> <u>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u>
<u>제12조(그 밖의 세부 절차 등) 제2</u> <u>조부터 제11조까지의 시행에 관</u> <u>한 구체적인 사항 및 절차 등</u> <u>필요한 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하</u> <u>여 고시한다.</u>	<u>제13조(그 밖의 세부 절차 등) --</u> <u>----- 제12조-----</u> <u>-----</u> <u>-----</u> <u>-----.</u>